

<p>제2020-154호 2020년 8월 14일(금)</p>	<p>시  보 여수시</p>	<p>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0-331호 소규모수도시설 폐지 및 재지정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20-332호 지방하천 점용허가 고시 11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0-2033호 보상계획 열람공고(삼산면 사무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2
- 여수시 공고 제2020-2036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모사금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14

기 타

- 여수시 규칙 제744호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6
- 여수시 규칙 제74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여수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34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소규모수도시설 폐지 및 재지정 고시

우리시에서 지정·관리하는 소규모수도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여수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폐지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여 수 시 장

소규모수도시설 재지정 내역

1. 폐지대상 시설

구분	소재지	시설명칭(관리번호)	사유	
폐지 시설	계		21개소(마을 6, 소규모 15)	
	마을 상수도 (7개소)	돌산읍(2개소)	대북(1-1-1), 작금(1-1-2)	지방상수도 공급
		율촌면(3개소)	봉전(1-2-1), 봉두(1-2-2), 광암(1-2-3)	”
		화양면(1개소)	옥적(1-3-1)	”
	소규모 급수 시설 (15개소)	돌산읍(4개소)	하덕곡(2-1-1), 서기(2-1-2) 덕곡(2-1-3), 송월(2-1-4)	”
		소라면(1개소)	가산(2-2-1)	”
		율촌면(5개소)	평여(2-3-1), 금산(2-3-2) 합동(2-3-3), 신대(2-3-7) 두봉(2-3-8)	”
		화양면(5개소)	수문(2-4-2), 연기(2-4-4) 화련(2-4-7), 용창(2-4-8) 대옥(2-4-11)	

2. 소규모수도시설 재지정

가. 마을상수도

관리 번호	시설 명칭	위 치			설치 년도	급수인구		공급량 (m ³ /일)	수원	비고
		읍면동	리	마을		세대	인구			
당초	총계	29개소				2,764	5,497	1,977		
변경		23개소				2,187	4,306	1,567		폐지 6
당초	돌산읍	3개소				364	730	220		
변경		1개소				82	183	47		폐지 2
당초	1-1-1	대 복	돌산읍	신복	대 복	1979	73	126	42	계곡수
										폐지
당초	1-1-2	작 금	〃	금성	작 금	1976	209	421	134	계곡수
										폐지
당초	1-1-3	월 암	〃	평사	월 암	1974	82	183	47	지하수
변경	1-1-1	월 암	〃	평사	월 암	1974	82	183	47	지하수
당초	울촌면	3개소				240	524	173		
변경		0개소				-	-	-		폐지 3
당초	1-2-1	봉 전	울촌면	봉전	봉 전	1997	67	144	48	지하수
										폐지
당초	1-2-2	봉 두	〃	봉두	봉 두	1993	105	215	71	지하수
										폐지
당초	1-2-3	광 암	〃	봉전	광 암	2009	68	165	54	지하수
										폐지
당초	화양면	5개소				389	863	369		
변경		4개소				334	743	305		폐지 1
당초	1-3-1	옥 적	화양면	옥적	옥 적	1999	55	120	64	지하수
										폐지
당초	1-3-2	창 무	〃	창무	창 무	2001	43	135	162	지하수
변경	1-2-1	창 무	〃	창무	창 무	2001	43	135	162	지하수
당초	1-3-3	서 촌	〃	서촌	서 촌	2002	115	250	65	지하수
변경	1-2-2	서 촌	〃	서촌	서 촌	2002	115	250	65	지하수
당초	1-3-4	장 등	〃	장수	장 등	2006	104	223	20	지하수
변경	1-2-3	장 등	〃	장수	장 등	2006	104	223	20	지하수
당초	1-3-5	장 수	〃	장수	장 수	2005	72	135	58	지하수
변경	1-2-4	장 수	〃	장수	장 수	2005	72	135	58	지하수

관리 번호	시설 명칭	위 치			설치 년도	급수인구		공급량 (m ³ /일)	수원	비고
		읍면동	리	마을		세대	인구			
당초	남면	2개소				341	629	260		
변경		2개소				341	629	260		
당초	1-4-1	연 도	남 면	연도	연 도	2015	279	504	200	지하수
변경	1-3-1	연 도	남 면	연도	연 도	2015	279	504	200	지하수
당초	1-4-2	횡 간	”	횡간	횡 간	1980	62	125	60	지하수 해수담수
변경	1-3-2	횡 간	”	횡간	횡 간	1980	62	125	60	지하수 해수담수
당초	화정면	6개소				501	931	466		
변경		6개소				501	931	466		
당초	1-5-1	월 호	화정면	월호	월 호	1980	83	180	73	지하수 해수담수
변경	1-4-1	월 호	화정면	월호	월 호	1980	83	180	73	지하수 해수담수
당초	1-5-2	여 산	”	낭도	여 산	1967	109	180	91	지하수
변경	1-4-2	여 산	”	낭도	여 산	1967	109	180	91	지하수
당초	1-5-3	적 금	”	적금	적 금	1990	74	121	42	지하수
변경	1-4-3	적 금	”	적금	적 금	1990	74	121	42	지하수
당초	1-5-4	여 자	”	여자	여 자	2002	103	219	60	지하수 해수담수
변경	1-4-4	여 자	”	여자	여 자	2002	103	219	60	지하수 해수담수
당초	1-5-5	낭 도	”	낭도	낭 도	2003	74	121	150	계곡수
변경	1-4-5	낭 도	”	낭도	낭 도	2003	74	121	150	계곡수
당초	1-5-6	제 도	”	제도	제 도	2007	58	110	50	지하수 해수담수
변경	1-4-6	제 도	”	제도	제 도	2007	58	110	50	지하수 해수담수
당초	삼산면	10개소				929	1,820	489		
변경		10개소				929	1,820	489		
당초	1-6-1	서도1	삼산면	서도	서 도	1982	80	168	56	계곡수
변경	1-5-1	서도1	삼산면	서도	서 도	1982	80	168	56	계곡수
당초	1-6-2	서도2	”	서도	서 도	1983	80	169	41	계곡수
변경	1-5-2	서도2	”	서도	서 도	1983	80	169	41	계곡수
당초	1-6-3	죽 촌	”	동도	죽 촌	1985	81	147	39	지하수
변경	1-5-3	죽 촌	”	동도	죽 촌	1985	81	147	39	지하수

관리 번호	시설 명칭	위 치			설치 년도	급수인구		공급량 (m ³ /일)	수원	비고
		읍면동	리	마을		세대	인구			
당초	1-6-4	대 동	”	초도 대 동	1989	98	183	48	지하수	
변경	1-5-4	대 동	”	초도 대 동	1989	98	183	48	지하수	
당초	1-6-5	의 성	”	초도 의 성	1990	62	130	30	지하수	
변경	1-5-5	의 성	”	초도 의 성	1990	62	130	30	지하수	
당초	1-6-6	진 막	”	초도 진 막	1977	50	101	24	지하수	
변경	1-5-6	진 막	”	초도 진 막	1977	50	101	24	지하수	
당초	1-6-7	손 죽	”	소죽 손 죽	1974	104	175	44	지하수	
변경	1-5-7	손 죽	”	소죽 손 죽	1974	104	175	44	지하수	
당초	1-6-8	유 촌	”	동도 유 촌	1983	70	150	37	계곡수	
변경	1-5-8	유 촌	”	동도 유 촌	1983	70	150	37	계곡수	
당초	1-6-9	초 도	”	초도 초 도	2013	223	447	150	계곡수	
변경	1-5-9	초 도	”	초도 초 도	2013	223	447	150	계곡수	
당초	1-6-10	덕촌1	”	덕촌 덕 촌	1973	81	150	20	지하수	
변경	1-5-10	덕촌1	”	덕촌 덕 촌	1973	81	150	20	지하수	

가.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번호	시설 명칭	위 치			설치 년도	급수인구		공급량 (m ³ /일)	수원	비고	
		읍면동	리	마을		세대	인구				
당초	총계	46개소				1,238	2,372	1,027		폐지 15 신규 1	
변경		32개소				783	1,466	731			
당초	돌산읍	4개소				129	282	95		폐지 4 신규 1	
변경		1개소				2	3	20			
당초	2-1-1	하덕곡	돌산읍	서덕	덕 곡	2002	7	15	5	지하수	
											폐지
당초	2-1-2	서 기	〃	서덕	서 기	1976	53	108	36	지하수	
											폐지
당초	2-1-3	덕 곡	〃	서덕	덕 곡	1982	31	81	28	지하수	
											폐지
당초	2-1-4	승 월	〃	서덕	승 월	1995	38	78	26	지하수	
											폐지
당초											
변경	2-1-1	금 죽		금봉	금 죽	2020	2	3	20	지하수	신규
당초	소라면	2개소				80	158	52			
변경		1개소				68	134	44			폐지 1
당초	2-2-1	가 산	소라면	덕양	덕양5구	1980	12	24	8	지하수	
											폐지
당초	2-2-2	봉두3	〃	봉두	봉두3구	1999	68	134	44	지하수	
변경	2-2-1	봉두3	〃	봉두	봉두3구	1999	68	134	44	지하수	
당초	울촌면	8개소				266	479	158			
변경		3개소				107	239	79			폐지 5
당초	2-3-1	평 여	울촌면	산수	산수2구	1990	36	40	13	지하수	
											폐지
당초	2-3-2	금 산	〃	금산	산수1구	1990	15	17	6	지하수	
											폐지
당초	2-3-3	합 동	〃	합동	상 봉	2008	26	30	10	지하수	
											폐지
당초	2-3-4	송 도	〃	여동	송 도	2009	72	176	58	지하수	
변경	2-3-1	송 도	〃	여동	송 도	2009	72	176	58	지하수	
당초	2-3-5	원가장	〃	가장	원가장	2011	10	23	8	지하수	
변경	2-3-2	원가장	〃	가장	원가장	2011	10	23	8	지하수	

관리 번호	시설 명칭	위 치			설치 년도	급수인구		공급량 (m ³ /일)	수원	비고	
		읍면동	리	마을		세대	인구				
당초	2-3-6	송 정	〃	가장	송 정	2011	25	40	13	지하수	
변경	2-3-3	송 정	〃	가장	송 정	2011	25	40	13	지하수	
당초	2-3-7	신 대	〃	산수	신 대	2009	34	59	19	지하수	
											폐지
당초	2-3-8	두 봉	〃	상봉	두 봉	1998	48	94	31	지하수	
											폐지
당초	화양면	12개소					354	711	358		
변경		7개소					197	348	226		폐지 5
당초	2-4-1	소 옥	화양면	옥적	옥 적	1986	20	35	16	지하수	
변경	2-4-1	소 옥	화양면	옥적	옥 적	1986	20	35	16	지하수	
당초	2-4-2	수 문	〃	장수	수 문	1990	28	35	16	지하수	
											폐지
당초	2-4-3	대서이	〃	이목	서 연	1985	16	50	17	지하수	
변경	2-4-2	대서이	〃	이목	서 연	1985	16	50	17	지하수	
당초	2-4-4	연 기	〃	용주	화 련	2002	13	24	8	지하수	
											폐지
당초	2-4-5	공 정	〃	장수	공 정	2004	18	23	8	지하수	
변경	2-4-3	공 정	〃	장수	공 정	2004	18	23	8	지하수	
당초	2-4-6	운 두	〃	이천	운 두	2011	7	13	4	지하수	
변경	2-4-4	운 두	〃	이천	운 두	2011	7	13	4	지하수	
당초	2-4-7	화 련	〃	용주	화 련	1979	43	105	35	지하수	
											폐지
당초	2-4-8	용 창	〃	용주	화 련	1999	43	101	33	지하수	
											폐지
당초	2-4-9	백 초	〃	창무	백 초	1999	46	82	64	지하수	
변경	2-4-5	백 초	〃	창무	백 초	1999	46	82	64	지하수	
당초	2-4-10	오 천	〃	이천	오 천	1999	43	83	57	지하수	
변경	2-4-6	오 천	〃	이천	오 천	1999	43	83	57	지하수	
당초	2-4-11	대 옥	〃	옥적	대 옥	2002	30	98	40	지하수	
											폐지

관리 번호	시설 명칭	위 치			설치 년도	급수인구		공급량 (m ³ /일)	수원	비고	
		읍면동	리	마을		세대	인구				
당초	2-4-12	장 척	”	장수	장 척	2005	47	62	60	지하수	
변경	2-4-7	장 척	”	장수	장 척	2005	47	62	60	지하수	
당초	남면	7개소					106	233	148		
변경		7개소					106	233	148		
당초	2-5-1	부 도	남면	안도	서고지	1982	7	11	6	지하수	수공
변경	2-5-1	부 도	남면	안도	서고지	1982	7	11	6	지하수	수공
당초	2-5-2	나 발	”	두라	나 발	1986	20	46	23	지하수	수공
변경	2-5-2	나 발	”	두라	나 발	1986	20	46	23	지하수	수공
당초	2-5-3	소두라	”	두라	나 발	1986	8	16	4	지하수	
변경	2-5-3	소두라	”	두라	나 발	1986	8	16	4	지하수	
당초	2-5-4	선 창	”	두라	선 창	2004	14	36	20	지하수	수공
변경	2-5-4	선 창	”	두라	선 창	2004	14	36	20	지하수	수공
당초	2-5-5	봉 통	”	두라	봉 통	1982	22	48	35	지하수	
변경	2-5-5	봉 통	”	두라	봉 통	1982	22	48	35	지하수	
당초	2-5-6	대 두	”	두라	대 두	2004	31	69	50	지하수	
변경	2-5-6	대 두	”	두라	대 두	2004	31	69	50	지하수	
당초	2-5-7	소횡간	”	횡간	소횡간	1998	4	7	10	지하수	수공
변경	2-5-7	소횡간	”	횡간	소횡간	1998	4	7	10	지하수	수공
당초	화정면	7개소					208	342	145		
변경		7개소					208	342	145		
당초	2-6-1	둔 병	화정면	조발	둔 병	1981	25	41	17	지하수	
변경	2-6-1	둔 병	화정면	조발	둔 병	1981	25	41	17	지하수	
당초	2-6-2	규 포	”	낭도	규 포	1976	26	36	11	지하수	
변경	2-6-2	규 포	”	낭도	규 포	1976	26	36	11	지하수	
당초	2-6-3	하 화	”	하화	하 화	1979	34	58	22	지하수	
변경	2-6-3	하 화	”	하화	하 화	1979	34	58	22	지하수	

관리 번호	시설 명칭	위 치			설치 년도	급수인구		공급량 (m ³ /일)	수원	비고	
		읍면동	리	마을		세대	인구				
당초	2-6-4	조 발	”	조발	조 발	1982	23	37	18	지하수	
변경	2-6-4	조 발	”	조발	조 발	1982	23	37	18	지하수	
당초	2-6-5	자 봉	”	자봉	자 봉	1990	28	47	17	지하수	
변경	2-6-5	자 봉	”	자봉	자 봉	1990	28	47	17	지하수	
당초	2-6-6	상 화	”	상화	상 화	1990	44	70	22	지하수	
변경	2-6-6	상 화	”	상화	상 화	1990	44	70	22	지하수	
당초	2-6-7	송여자	”	여자	송여자	1990	28	53	38	지하수	
변경	2-6-7	송여자	”	여자	송여자	1990	28	53	38	지하수	
당초	삼산면	5개소					75	132	51		
변경		5개소					75	132	51		
당초	2-7-1	변 촌	삼산면	변촌	변 촌	1976	16	28	16	지하수	
변경	2-7-1	변 촌	삼산면	변촌	변 촌	1976	16	28	16	지하수	
당초	2-7-2	예 미	”	초도	대 동	1986	13	33	9	지하수	
변경	2-7-2	예 미	”	초도	대 동	1986	13	33	9	지하수	
당초	2-7-3	소거문	”	손죽	소거문	1979	14	22	7	지하수	
변경	2-7-3	소거문	”	손죽	소거문	1979	14	22	7	지하수	
당초	2-7-4	평 도	”	손죽	손 죽	1982	24	35	9	지하수	
변경	2-7-4	평 도	”	손죽	손 죽	1982	24	35	9	지하수	
당초	2-7-5	광 도	”	손죽	광도	2011	8	14	10	계곡수	
변경	2-7-5	광 도	”	손죽	광도	2011	8	14	10	계곡수	
당초	주삼동	1개소					20	35	18		
변경		1개소					20	35	18		
당초	2-8-1	고 막	”		고 막	1999	20	35	20	지하수	
변경	2-8-1	고 막	”		고 막	1999	20	35	20	지하수	

지방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여수시장

□ 허가내용

허가번호		2020-21
하천의 명칭		중흥천
점용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77, 4층 475호
	성 명	로*테크
점용지역	위 치	여수시 중흥동 1691번지
	면 적	449.6㎡
점용목적		공장설비 운송을 위한 가도 설치
점용기간		2020. 8. 7. ~ 2020. 10. 30.

보상계획 열람 공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삼산면 사무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14.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삼산면 사무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여수시장
- 사업규모: L=196m, B=6~8m (1,722m²)
- 사업기간: 2020. 8. 13.~2021. 12. 31.

2. 열람공고기간: 2020. 8. 14.~8. 28.(15일간)

3.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여수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 우리 시 도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여수시 홈페이지 주소: www.yeosu.go.kr 게재

4. 보상시기: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은 현금보상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보상금을 계좌 입금합니다.
-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 감정평가업자명: 해당사항 없음

토지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주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및 진행할 예정입니다.

6. 기 타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여수시 도로과(☎061-659-4066)로 문의바랍니다.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모사금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 8.14.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모사금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 나. 사업의 위치 : 여수시 오천동 341-9번지 일원
- 다.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여수시 시청로 1)

2. 공고내용

- 가. 공고내용 :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문 송달
- 나. 공고기간 : 2020. 8.14. ~ 2019. 8. 28.(15일간)
-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손실보상협의

- 가. 협의기간 : 2020. 8.14. ~ 2019. 8. 28.(15일간)
- 나. 협의장소 : 여수시 도로과(여수시 시청동1길 23)
- 다. 보상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걸쳐 계좌입금
-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61.659-4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	비고
1	권수*	여수시 오천동 36*	
2	김동*	여수시 오천동 38*	
3	김종*	여수시 오천동 38*	
4	배의*	여수시 오천동 36*	
5	윤서*	여수시 오천동 31*	
6	이정*	여수시 오천동 14*	
7	김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9*	
8	강순*	광주시 북구 평교로 4*,10*동 20*호(평교동, 대주맨션)	
9	박조*	여수시 오천동 35*-8	
10	곽명*	여수시 오천동 71*	

제8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8 월 14 일

여 수 시 장 김 오 봉 

여수시 규칙 제744호

붙임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사용허가)”를 “(이용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이하 “이용허가 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이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허가를”을 “이용허가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체육시설 사용을”을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을”로, “사용허가대장”을 “이용(사용)허가대장”으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를 “이용(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연습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습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3조제1항에 따라 연습이용료를 납부한 후 연습권을 교부받아 이용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습사용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④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우천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 또는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이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연기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⑤ 체육시설 이용허가 등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체육시설 이용(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0조의 사용료(연습사용료 포함)”를 “제7조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로, “사용신청자”를 “이용허가 등의 신청자”로, “(연습권 포함)”을 “(연습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허가받은 사항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완료와 동시에 초과분을 납부해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출입증발행)”을 “(출입증 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수행”을 “업무 수행”으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관계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라”로, “기록·유지하여야”를 “기록·유지해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입장권의 발매)”를 “(관람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전용사용자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표가 완료된”을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발행한 관람권 등의 판매가 완료되었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이나 초대권(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등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신청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 등은 무효이며, 무효인 관람권 등을 소지한 사람은 해당 행사에 입장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 등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당일 현장 판매 개시 전까지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관람권 등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입장권) 조례 제10조제1항의 입장권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다. 제9조 중 “연습권”을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연습권”으로, “발매”를 “발행”으로, “따라 연습권과 입장권을 분리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체육시설 이용(사용) 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소 (단체명)		전화번호 (연락처)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기간	주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일간)				
	야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일간)				
사용내용	시설명				참여인원	
	사용목적 (행사명)					
부속시설 장비사용	방송장비				전광판	
	조명시설				스코어보드	
	전기시설				운동기구	
	냉·난방				기타	
관람권 (입장권)	종류	계	특별관람권	일반관람권	군경학생권	입장권
	매수	매	매	매	매	매
	금액	원	원	원	원	원
사용료	원(납부 연월일 :)					
특기사항						
<p>「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사용) 신청 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 (인)</p> <p>여수시장 귀하</p> <p>첨부 1. 사용(사업) 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 계획서 1부.</p>						

[별지 제 3호 서식]

체육시설 이용(사용) 허가증							
허가번호							
신청인 (사용자)	주소 (단체명)				전화번호 (연락처)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시설							
사용기간	주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일간)
	야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일간)
사용목적 (행사명)				참여인원			
부속시설 허가내용	방송장비				전광판		
	조명시설				스쿠어보드		
	전기시설				운동기구		
	냉·난방				기 타		
관람권	종 류	특별관람권	일반관람권	군경학생권	기 타	합 계	
	액 면 가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매 수	매	매	매	매	매	
사 용 료 납부사항							
허가조건	뒷면 기재 내용과 같음						
<p>「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사용)허가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여 수 시 장 (인)</p>							

[별지 제3호 서식 뒷면](생략)

[별지 제3호 서식 뒷면](현행과 같음)

(별지 제4호 서식)

체육시설 연습(이용) 신청서					
번호		체육시설명			
신청인	주소	연 락 처			
	성명	생년월일			
사용 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사용시간 : 시간)				
사용 목적		사용 인원		사용료	
<p>「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습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여 수 시 장 귀 하</p>					

체육시설 연습권					
번호		체육시설명			
신청인	주소	연 락 처			
	성명	생년월일			
사용 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부터 (사용시간 : 시간)				
사용 목적		사용 인원		사용료	
<p>「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연습 이용을 허가하오니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여 수 시 장 (인)</p>					

[별지 제5호 서식]

체육시설 연습이용 접수 및 연습권 교부대장

구분 접수번호	접수자	신청인		연습사용내용				사용료	결재		
		주소	성명	시설명	사용일시 (: ~ :)	인원	사용목적		담당자	팀장	과장
					월 일 (: ~ :)						
					월 일 (: ~ :)						
					월 일 (: ~ :)						
					월 일 (: ~ :)						
					월 일 (: ~ :)						
					월 일 (: ~ :)						
					월 일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u>」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용허가) ① 「<u>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u>긴급을 요할 때</u></p> <p>2. 체육시설의 <u>사용허가</u>를 받은 자가 <u>부속시설</u>을 사용할 때</p> <p>② 시장은 <u>체육시설 사용</u>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 <u>사용허가대장</u>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시설 <u>사용허가증</u>을 교부하여야 한</p>	<p>제1조(목적) ----- 「<u>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p> <p>제2조(이용허가 등) ① 「<u>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 <u>이용허가</u> 또는 <u>사용허가</u>(이하 "이용허가 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u>체육시설 이용(사용)허가신청서</u>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렇지 않다.</p> <p>1. <u>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u></p> <p>2. ----- <u>이용허가</u> 등을 -----</p> <p>② ----- <u>체육시설의 이용</u> 또는 <u>사용</u>을 ----- <u>이용(사용)허가대장</u>-----</p> <p>-- <u>이용(사용)허가증</u>을 교부해</p>

다.

③ 연습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습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3조제1항에 따라 연습사용료를 납부한 후 연습권을 교부받아 사용하여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우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사용허가 사항을 연기할 수 있다.

⑤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10조의 사용료(연습사용료 포함)는 시장이 발행한 납부서에 따라 사용신청자가 시금고에 직접 납부하고 납입영수증 사본을

야 -----
--.

③ 연습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습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3조제1항에 따라 연습이용료를 납부한 후 연습권을 교부받아 이용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습사용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④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우천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 또는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이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연기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⑤ 체육시설 이용허가 등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체육시설 이용(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① -- 제7조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
--- 이용허가 등의 신청자-----

지참하여 허가증(연습권 포함)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의 초과사용료(연습사용 포함)는 사용완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감면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문화예술행사
3. 아시아 또는 세계적인 규모의 경기
4.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육대회 및 종목별 대회
5.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시 대표선수 강화 훈련. 단, 여수시통합체육회, 여수시장애인체육회에서 통보한 선수에 한정함
6. 시가 유치한 각종 전지훈련

------(연습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허가받은 사항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완료와 동시에 초과분을 납부해야 한다.

<삭 제>

7. 여수시통합체육회, 여수시장
애인체육회에서 직접 주관하
는 행사

8.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체육행사

9.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국민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의
료·교육급여) 수급자, 어린
이,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국가보훈대상자, 군인
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나 행
사

10.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는 중
목 체육선수의 연습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에 대해서는 전기사용료를 제외
한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용료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는 제외한다.

1. 여수시통합체육회, 여수시장
애인체육회 소속 종목단체에
서 직접 주관하는 체육행사

2. <삭 제>

3.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하여 후원 또는 협찬 하는 행사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기사용료를 제외한 연습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소년소녀가장
2.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3. 국가보훈대상자
4. 국가유공자
5. 군인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연습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시행 이전에 체육업무 담당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얻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어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과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제6조(출입증발행) ①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2. (생략)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출입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권의 발매) 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입장권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신설>

제6조(출입증 발행) ① -----
---- 업무 수행-----
경우에는 -----
----- 사람-----

----.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

---- 기록·유지해야 -----.

제7조(관람권 등) ①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이나 초대권(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등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신청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 등은 무효이며, 무효인

② 전용사용자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표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관람권 잔표확인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람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용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당일 현장매표 개시전까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한다.

<신 설>

제8조(검인)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의한 검인신청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은 (초대권 포함)무효이며, 이를 소

관람권 등을 소지한 사람은 해당 행사에 입장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발행한 관람권 등의 판매가 완료되었을 -----

-----.

<삭 제>

④ 사용자는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 등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당일 현장 판매 개시 전까지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관람권 등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입장권) 조례 제10조제1항의 입장권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발행한다.

지한 자는 입장할 수 없다.

제9조(수불부정리) 연습권 또는
입장권을 발매할 때에는 그 수
불상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연습권과 입장권을 분리하
여 정리한다.

제9조(수불부정리) 제3조 및 제8
조에 따라 연습권 -----
----- 발행-----
-- 따라 -----
-----.

제8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여수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8 월 14 일

여 수 시 장

권오봉



여수시 규칙 제745호

붙임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여수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74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여수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여수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여수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계리”를 “처리”로 한다.

제2조(「여수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의 개정) 여수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해득”을 “이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맡 또는”을 “지위 없애거나”로 한다.

제86조제1항 단서 중 “가격양등”을 “가격 오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여수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금의 위탁관리) ① ~ ④ (생략)</p> <p>⑤ 기금취급수탁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u>계리</u>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의 관리 운용에 따른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p>	<p>제3조(기금의 위탁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u>처리</u>----- ----- -----.</p>

2. 여수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u>해득</u>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p> <p>② ~ ⑤ (생략)</p> <p>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u>도말</u> 또는 <u>개서</u>할 수 없다.</p>	<p>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 ----- ----- ----- ----- <u>이해</u>-----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지워 없애거나</u> ----- -----.</p>

<p>제86조(소요산정)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u>가격양등</u>이 확실한 자재에 대해서는 2분기분이상 1사업 연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86조(소요산정) ① ----- ----- ----- -----<u>가격 오름</u>----- ----- ----- -----.</p> <p>② (현행과 같음)</p>
---	---